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9. 12) 상정
-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9. 1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

가. 제안이유

-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변론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이 지정하는 중요소송에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추가함.(안 제4조 제4항제5호 신설)
-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은 1회에 한하여 4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소송비용 지원관련 공무수행 판단 기준은 있는지 ?	○ 시 행정과 업무추진 과정으로 한정을 하며, 지원사유 발생시 사전 관련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결심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가 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제138호
의 년 월 일	결 월 일	2007. 9.14 (제138회)

제출년월일 : 2007. 8. 2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변론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지정하는 중요소송에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제5호 신설)
- 나.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은 1회에 한하여 4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을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6인이내”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인 이내”로 하고, “단, 고문변호사중”을 “다만, 고문변호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준에 의하여”를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만원이내”를 “20만원 이내”로 하며, “5회이상”을 “5회 이상”으로 하고, “10만원이내”를 “10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중”을 “제1항의 비용 중”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등”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골당등”을 “납골당 등”으로 하며, 제2호 중 “10억원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제4조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소송비용은 1회에 한하여 4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노력정도등”을 “노력정도 등”으로 하고,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당해” 및 “기타 당해”를 각각 “해당” 및 “그 밖에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u>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6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고문변호사중 2분의 1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시장은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가. ~ 라. (생략)</p> <p>제3조(임무) ①고문변호사는 <u>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u></p> <p>1. · 2. (생략)</p> <p>3. <u>기타 법령해석에 관한사항</u></p> <p>② (생략)</p>	<p><u>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u>운영에</u>----- -----.</p>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 -----<u>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인 이내</u>----- ----- <u>다만, 고문변호사 중</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제3조(임무) ① -----<u>다음 각 호에서</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위원회는 당해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수입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p> <p>5. 기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의회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p>	<p>----- -----.</p> <p>② ----- 해당----- ----- 노력정도 등----- 다음 각 호-----.</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해당----- -----</p> <p>5. 그 밖에 해당----- -----</p> <p>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 -----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p>